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8월 13일, 이만희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1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9.2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12.4.)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 상정, 소위심사보
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만희 의원)

축산법은 축산업의 발전,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 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간 국민의 식생활 변화에 따른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여 왔음.

그러나, 축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무단으로 유기된 사슴으로 인해 섬(전남 영광군 낙월면의 안마도 등) 생태계 및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축산업자의 법 이해 부족으로 인한 사육 밀도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지역 주민들과 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거나 복잡한 법체계에 의해 축산농가 등의 법 준수 노력을 유도하기 어려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축산업의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자 외에 가축사육업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도 6개월 이내에 가축을 처분하게 하고, 사육하던 가축의 유기를 금지하면서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무단 유기된 가축으로 인한 생태계 및 농작물 등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며,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라면 누구나 알기 쉽게 법적 준수사항을 업태별, 규제 목적별로 구분 규정하면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규정하고 있는 방역 준수 의무와 유사한 규정은 축산업자 등의 법 준수 부담을

고려해 위반 시 처분을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영업 신고 절차상 수리제도를 마련하고,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인수 시에도 승계됨을 명확히 규정하여 불명확한 법 규정으로 인한 축산업자 등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6조·제27조 및 제50조의2).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최용훈 수석전문위원)

첫째, 현행법은 축산업의 지위를 승계하는 요건으로 사망·양도 및 합병을 규정하고 있으나, 경매·환가·매각 등으로 영업용 시설의 전부를 인수하는 경우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경매·환가·매각¹⁾ 등으로 적법하게 영업용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경우 현행법상 양수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축산업의 허가 또는 등록 절차를 새롭게 이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개정안에 따라 경매·환가·매각 등의 절차를 통해 기존 양도인 등의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도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영업 승계 신고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상기 영업 승계자의 불편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행정처분 승계 규정 필요성’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현행법상 영업 승계 신고 수리와 관련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 반면, 실제 운용은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운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일선 현장에서 이와 관련한 해석상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영업 승계 신고를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일선 현장에서 행정청 및 국민의 법률 해석과 적용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가축사육업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가축 처분 의무가 규정되지 않아,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가축사육업자가 가축을 유기하거나, 등록취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가축을 사육할 우려가 있음.

또한, 가축사육업의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가축을 계속하여 사육하는 경우 현행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가축사육업의 허가과 등록 간에 차이가 사육시설의 면적²⁾뿐이므로, 이를 달리 규정할 합리적

2)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

「축산법 시행령」

제1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 3. 2016년 2월 23일 이후: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돼지·닭 또는 오리 사육업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③ 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에게도 가축 처분 의무를 부여하여 법 체계의 균형을 도모하는 한편, 가축유기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개정안은 필요한 조치로 보임.

다만, 안 제53조제4호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처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 후에도 계속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안 제25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6개월 이내에 가축을 처분하여야 한다.”고 ‘가축처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상기 ‘가축처분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는 ‘계속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외에 ‘가축을 유기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안 제53조제4호를 “제25조제3항을 위반한 자”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넷째, 개정안은 현행법 제26조의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가축의 건강관리 및 복지에 관한 규정과 가축의 유기 금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공장식 축산³⁾은 휴식과 식사, 배설 등 가축의 모든 활동이 제한된 공간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위생상태가 청결하게 유지되지 못하여 가

3) 최소 비용으로 생산량을 최대화하기 위해 동물이 생명체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욕구와 습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물을 한정된 공간에서 대규모 밀집 사육하는 축산의 형태

축의 질병이 발생·확산되는 등 축산 농가에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국민의 건강에도 직간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가축의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위생적인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관련위원회 의견 요지

없음